지방자치 Focus
2014. 1
제67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Ⅰ. 서론
Ⅱ. 개념적 고찰 : 국정철학으로서 현대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Ⅲ. 실제적 접근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특징과 시범사업 추진현황
Ⅳ. 표준모델(1) : 안심마을형 기본모델의 추진방안
Ⅴ. 표준모델(2) : 지역복지형 기본모델의 추진방안
Ⅵ. 결론: 개선점과 후속연구

지방자치 FOCUS 제67호(2014. 1)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인수
02-3488-7378 / ischoi@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99)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I. 서론

○ 본 연구는 2013년 5월 23일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착·확산을 위하여 요구되는 7개 유형의 자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추진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그림 1〉 주민자치회 추진모델 7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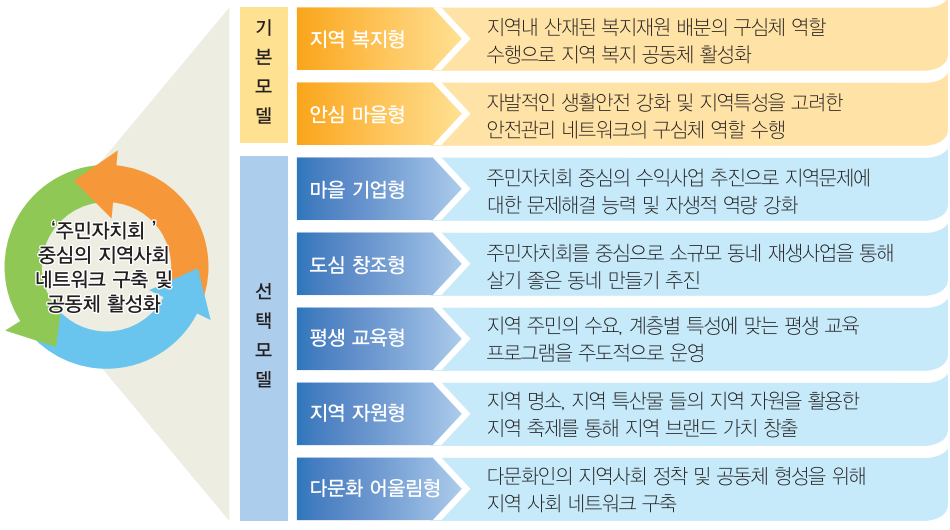

○ 박근혜 정부는 '13년 6월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2014년 7월 혹은 그 이후까지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모델과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생활안전(4대악 근절) 제고 등 주민행복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지향함

○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에서는 자치회 활동에 있어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의 2개 기본형과 함께,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어울림형 등 5개 선택형 모델을 병행함

○ 본 연구와 후속연구는 이와 같은 7개 유형에 대한 적절한 추진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구성함, 즉 첫 번째 연구에서는 7개 유형 중 우선적으로 2개 기본형에 대한 적절한 추진모델을 제시하고, 나머지 5개 유형의 추진모델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다룰 예정임

Ⅱ. 개념적 고찰 : 국정철학으로서 현대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주민자치회의 개편을 통해 근린자치를 강화하려고 하는가? 이는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근린자치를 강화할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이를 국가발전과 선순환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성장의 둔화로 인해 사회 양극화와 노령화 등 국가발전의 한계가 예측되고 있으며,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발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전환되고 있음

○ 더욱이 현대사회는 고도의 역량을 갖춘 개인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예컨대 복지사각지대나 4대 사회악 및 노후산단 · 시설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로 대별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 과거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관 혹은 행정의 영역으로 자리잡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안전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자였고, 지역사회는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비스만을 바라보게 되었음

○ 정부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은 단지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간주한 경향이 존재했고, 고도로 복잡화된 지역현안에 대해 관 주도적인 문제해결방식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전술한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졌고, 지역사회가 더 이상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 혹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강조되었음

○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적 지역문제에 대해 이러한 관 주도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소통 · 나눔과 공존의 정신을 지닌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음

○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는 '공적기관(국가)과 재생산을 위한 사적단위(기업과 가족)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자발적으로 조직된 중간매개집단, 시민사회 대표영역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게 되었음

○ 과거 혈연적 연고집단에 가까운 권위적 · 기계적 연대의 사회구조가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 유기적 연대의 사회구조로 개편되었음,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변화에 있어서 풍부한 유기적 연결망의 구축이나 호혜성과 규범에 의한 신뢰의 구축은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의미함

○ 그렇다면 주민행복을 위한 현대적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유효한 공간단위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을 효과적으로 행정과 소통하기 위한 전제는 이 공간단위가 주민과 근접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며 동시에 주민과 행정이 협업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단위는 바로 '근린(neighborhood)'이라는 단위임

○ 근린(近隣)은 지역주민의 행복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친밀권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 형성의 최적단위임, 근린단위는 일반적으로 인구 500명 이상 2만명 이하의 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며, 행정구역으로 볼 때 읍 · 면 · 동에 해당함

○ 또한 이러한 읍 · 면 · 동 단위에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근린자치는 현대적 지역공동체를 위한 가장 유효한 공간단위가 '근린'이라는 거버넌스 철학을 바탕으로 함

○ 즉 '주거지 주변의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과 생산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근린자치로 볼 수 있음

○ 이 결과로서, 전술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간 나눔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뢰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돌봄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킴

○ 요컨대, 21세기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맞아 국민행복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화두가 된 현재 시점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레짐은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실제적인 견지에서 읍 · 면 · 동 근린단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근린단위에서의 기능 및 역량의 강화를 통해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점으로서 개개인의 생활 속에 산재한 어려움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Ⅲ. 실제적 접근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특징과 시범사업 추진현황

○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에 서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이전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이 전환된 것임. 1999년에 중앙정부가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에 전국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확대하였음, 이때 읍면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전국 3,487개의 읍·면·동 가운데 2,734개(142개 읍, 612개 면, 1,98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함,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 종사자이며, 농·축·어업 종사자, 직능민간단체 종사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전문가와 젊은층의 주민자치위원으로의 활동은 미약함

○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기능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문화·여가와 관련한 것의 비중이 매우 높아, 문화·여가·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었음

○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협력의 근린자치 모델로서 주민자치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임

○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말까지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개별 법률제정을 통해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2〉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기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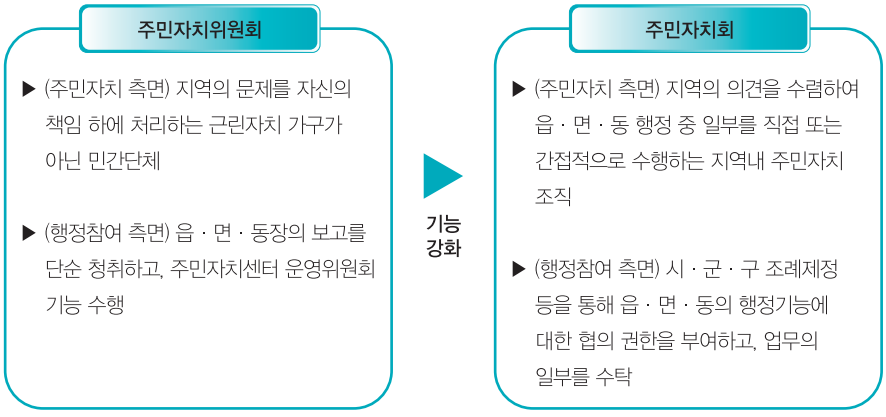

○ 안행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는 읍 · 면 · 동의 행정기능을 공공성, 민주성, 주민접근성을 기준으로 하여 고유한 행정업무, 협의업무, 위 · 수탁 및 주민자치 업무로 구분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배분할 업무를 확정하게 됨. 주민자치회로 부여되는 이러한 다양한 사무의 성격과 예는 다음과 같음

① 고유행정업무 : 전국 단위로 통일하여 처리하거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는 관여하지 않음

예시) 예산, 경리, 인사 및 복무관리, 주민등록, 인감, 각종 증명서 발급 입영통지서 송달, 각종 통계조사 등

② 협의업무 : 읍 · 면 · 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

예시)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지역축제 운영계획, 지역내 행정구역 변경계획 등 주민간 이해조정역할, 시 · 군 · 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위 · 수탁업무 : 읍 · 면 · 동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탁하여 처리

예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주차장 관리 등

④ 주민자치 업무 : 행정과 관련 없는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사무로서 주민자치회가 자신의 책임하에 의제설정 및 집행

예시) 각종 교육활동(주민자치, 인문교양, 방과후 교육), 읍·면·동 각종 행사(마을축제, 체육대회),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육아시설 운영 등

〈그림 3〉 주민자치회로 부여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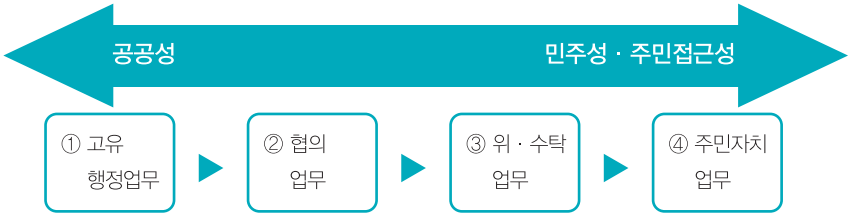

○ 한편 현행 주민자치회 추진모델은 당초 세 가지 유형의 모델에서 축소하여 하나의 유형만 실시 중임, 2012년 6월 주민자치회 모델(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는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에 따라 표 1과 같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세 가지 모델(안)이 도출되었으나, 협력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시범실시가 불가하여 협력형 모델에 따른 시범실시가 추진 중

○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지방선거 등 추진상황에 따라 2014년 12월말까지 진행될 것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보고 주민자치회 전국적 추진의 속도가 결정될 예정임

○ 시범실시를 위해 지난 4~5월에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에 응한 166개 읍·면·동 중 31개를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13년 6월)하였음, 또한 안행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10개의 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선정('13년 9월)하여 추진 중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함, 주민자치회는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30명으로 구성되며, 이·통장 연합회가 추천하여 선정하는 지역대표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대표위원, 전문가·직능대표 중심의 직능대표위원으로 구성됨

○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절차를 통해 선출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자체장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11월 현재까지 31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 중 22~3개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그 조례의 내용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음

〈표 1〉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에 따른 세 가지 추진모델

구 분	주민자치회 관련 조직구성 및 기능	비 고
협력형	시·군·구 ↓임용 위임·위탁↓ 읍·면·동 사무소 협의→심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연합회	▶ '13년 시범사업 ▶ 주민자치회는 현 읍·면·동사무소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심의적 지위를 가짐
통합형	시·군·구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기구 주민자치회 연합회	▶ 법개정 필요 ▶ 주민자치회 안에 심의기구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를 구성
주민 조직형	시·군·구 ↓위임·위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회 ↓지휘·감독 사무기구 공무원 임용 주민자치회 연합회	▶ 법개정 필요 ▶ 주민자치회 안에 심의의결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로서의 읍·면·동 사무소를 구성

○ 표준조례(안)의 내용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위원선정위원회에게 있음, 표준조례(안)중 선정위원회를 읍·면·동장 추천위원 0명, 이·통장 연합회 추천위원 0명,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0명으로 구성하게 한 것은 대다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지역공동체 강화와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음.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선출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와 그를 통한 주민들의 권한이 위임되는 실질적인 장치가 보장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음

○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 추천권자도 주민대표위원을 제외한 지역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추천한 그룹에서 선정까지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Ⅳ. 표준모델(1) : 안심마을형 기본모델의 추진방안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 안전행정부의 추진방안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역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안심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

○ 안전시범마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도시는 4~5개소, 농어촌은 2~3개소, 그리고 특정지역은 2~3개소로 유형화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활동은 주민들이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①4대악 등 범죄예방, ②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③재난대비, ④취약계층안전, ⑤기타 안전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이를 위해 지자체는 안전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선정규모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하되, 지역안전 확보에 대한 주민·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표준모델 구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표 2 참조)

〈표 2〉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의 유형구분

구 분	해당지역 예시	규 모
도시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밀집지역	▶ 3,000세대 내외 아파트단지 ▶ 500세대 내외 단독주택단지
농어촌지역	▶ 농업지역, 어업지역	▶ 10개 내외 법정리, 20~30개 자연마을 ▶ 1차산업 종사가구 비율 50% 이상
특정지역	▶ 상업단지,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 상가·재래시장 등 특정시설 인근지역	▶ 해당지역 전체

○ 상기에서 간단히 언급한 사업대상지 유형별로 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모델이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1단계는 지역안전네트워크 구축임 :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내·외의 안전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의 파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은 모든 활동의 주체이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지역의 사업자(기업, 소상공인, 편의점 등)는 자원공유 및 협력활동 등을 하게 됨, 또한 주민조직과 지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연계협력과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됨

○ 2단계는 지역주민 안전워크숍을 주최하는 단계 : 마을(통·리) 혹은 근린생활권(읍·면·동)에 대한 주민워크숍을 개최하며 이는 주민자치회 주도의 '(가칭)안심마을추진 주민협의회'가 주관, 대규모 원탁회의 및 타운홀 미팅 혹은 소규모 그룹토의를 지향하며 다양한 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주제별로 여러 번 개최하는 것도 가능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 이 단계에서는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community safety mapping)'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작성해야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3단계는 마을 패트롤(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 : 안심마을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주민이 참여한 형태의 마을 패트롤이 구성되어 마을의 안전활동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직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읍 · 면 · 동 단위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구성하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안심마을 순찰대의 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마을 패트롤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조직 및 임원구성, 표준화된 정관 작성 등과 같은 명시적인 조직화를 추진해야 함

○ 아울러 참여하는 주민들 간 기획 · 회계 · 홍보 · 기록 등 조직 내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마을순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또한 안심마을시범사업의 표준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활동가와 주민들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마을 패트롤의 각종 안전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조직성을 확보해야 함, 예컨대 안심마을에 대한 표준디자인으로서 패트롤 활동을 상징하는 색을 하늘색으로 가정한다면, 패트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하늘색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급함

○ 가령, 경광등을 부착한 순찰차와 전기자전거, 유니폼, 완장, 순찰 안내판 및 안내봉, 기록지 및 문구 등을 하늘색으로 디자인(전국적으로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할 필요가 있음

○ 4단계는 마을안전과 관련된 환경 및 인프라의 개선계획 단계 : 마을안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계획이 필요함, 즉 재난, 생활, 교통, 취약계층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개선 목표를 우선 설정한 후 그 목적에 필요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단계라 할 수 있음

〈표 3〉 안심마을형 시범사업 6단계 표준모델

구 분	주요 활동
[1단계] **지역안전 네트워크 구축**	▶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내외의 안전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의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주민자치회 · 주민조직, 지역사업자, 지역단체, 행정 · 유관기관, 전문가 등) ▶ (가칭)안심마을추진협의회 구성 및 MOU · 협약 체결, 각종 안전활동에 대한 분과운영위 설치 등 조직화
[2단계] **주민참여 안전워크숍 주최**	▶ 추진협의회 주관 주민참여형 워크숍(원탁회의 등) 개최 ▶ 주민 안전인식 조사, 주제별(방재 · 방범 · 교통 · 취약계층 등) 마을안전지도 작성 및 현장답사,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주민 간 돌봄네트워킹 구축 등 시행
[3단계] **마을 패트롤의 조직화 및 운영**	▶ 50명 내외의 표준화된 마을 패트롤 구성 및 운영, 안행부 안심마을의 표준디자인 적용 및 행정지원(장비 등)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회 차원의 수익사업 발굴, 정관 및 일관된 운영규칙 등 조직화 및 자원봉사 리크루팅, 자원봉사보험 등 제도화, 지역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가칭)안심마을의 날 행사 등 주관
[4단계] **마을환경 안전 인프라 개선**	▶ 방재, 방범 및 취약계층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및 안전 인프라 개선계획 수립, 목표 · 성과지표 설정 및 백서를 통한 기록 등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IP · CCTV 설치 및 마을환경 및 도로 구조개선, 가로정비, 폐 · 유휴시설 정비 등
[5단계] **지역특화 안심마을 활동**	▶ 도시, 농촌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마을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특화된 사업발굴 및 시행,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주민협약 및 MOU 등을 통한 구조화 ▶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 · 식품안전, 취약계층 안전 등 다양한 특화사례 벤치마킹 등
[6단계] **커뮤니티 안심허브 구축 · 운영**	▶ 다양한 안심마을 활동을 위한 자주적 활동거점(예: 일본 지역안전 · 안심스테이션 등) 구축, 필요 시 신축, 폐 · 공가 및 폐교 등 리모델링 등 ▶ 안전 관련 지역정보 집약 및 공유의 거점: 마을안전지도 · 마을안전소식지의 작성 및 게시, 마을 IP · CCTV 통합관제 혹은 데이터백업 센터 및 마을안전상황실 등 구축, 활동단체간 자원(기자재, 설비 등) 및 정보공유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 이를 위해서는 마을환경 정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의 적용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5단계는 지역특화된 안심마을의 계획 및 집행단계 : 도시 · 농촌형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마을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관한 이슈가 다르며 특화된 사업이 존재함, 특화된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필요시 주민협약이나 MOU 등의 체결을 통한 공식화가 필요. 이러한 지역특성화 모델의 예로,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내 상습 · 취약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개봉1동의 수해예방 활동을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6단계는 지역안심허브를 구축하는 것임 : 지역 안심허브의 역할은 4대악 등 생활안전, 교통안전, 방재 및 화재안전, 취약계층 안전, 산업안전 등 다양한 안심마을 활동을 위한 자주적 활동거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임

○ 참고로 일본의 지역안전안심스테이션(경찰청 및 소방청 사업)은 필요 시 신축하거나 폐 · 공가 및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서 안심마을 주민활동 및 관련시설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공간을 통해 마을 패트롤, 마을순찰 · 방범대 등 다양한 마을의 안전 관련 주민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모임공간을 제공하고 기자재 · 시설 등의 비치 · 공유를 가능하게 함

○ 또한 마을 안전지도의 작성 및 공유, 안전 · 안심정보 전자게시판 혹은 마을안전 소식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주체 간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필요 시 지역 혹은 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마을안전상황실 등의 입지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안전 관련 지역정보의 집약 및 공유의 거점으로 활용

○ 상기의 표준모델의 적용은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위해 제안된 표준안이며, 실제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될 필요도 있을 것임, 따라서, 여기서는 시론적인 소개의 수준에서만 다루고자 함

Ⅴ. 표준모델(2) : 지역복지형 기본모델의 추진방안

○ 본 장에서는 앞서 안심마을과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유형 중 기본모델로 제시된 지역복지형의 추진모델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교육 · 범죄 · 의료와 같은 사회문제나 노인 · 장애인 · 아동 · 여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를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정의함

○ 여기서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이란 낙후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간재생 방식과 더불어 지역화된 빈곤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경제재생을 포함,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방식을 결합한 실천방식을 일컬음

〈표 4〉 지역복지형 시범사업 6단계 표준모델

구 분	주요 활동
[1단계]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 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내외의 복지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의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주민자치회 · 주민조직, 지역사업자, 복지 · 종교 등 지역단체, 행정 · 유관기관, 전문가 등) ▶ (가칭)복지마을추진협의회 구성 및 MOU · 협약 체결, 각종 분과활동에 대한 분과운영위 설치 등 조직화
[2단계] **주민참여 복지워크숍 주최**	▶ 추진협의회 주관 주민참여형 워크숍(원탁회의 등) 개최 ▶ 주민 복지인식 조사, 주제별(취약계층 분포, 독거노인 서로돕기 지도, 여성 · 다문화 자원지도, 냉난방 및 주거복지 등) 마을복지지도 작성 및 현장답사,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주민 간 돌봄네트워킹 구축 등 시행
[3단계] **마을봉사단 조직화 및 운영**	▶ 주민자치회 차원의 복지지원 사업 발굴, 파악된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 추진 등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및 일관된 운영규칙 등 조직화 및 자원봉사 리크루팅, 마을복지 재원마련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구 분	주요 활동
[4단계] **마을복지 인프라 개선**	▶ 취약계층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및 인프라 개선계획 수립, 목표 · 성과지표 설정 및 백서를 통한 기록 등 ▶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마을육아 · 교육, 마을문화 · 예술 · 체육시설, 마을세탁소 · 반찬가게 등 가사서비스, 장애인 인프라 개선 등
[5단계] **지역특화 복지마을 활동**	▶ 도시, 농촌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복지사업 발굴 및 시행,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주민협약 및 MOU 등을 통한 구조화 ▶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례 벤치마킹, 마을내 취약계층이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
[6단계] **커뮤니티 복지허브 구축 · 운영**	▶ 다양한 복지마을 활동을 위한 자주적 활동거점 구축, 기존 복지 인프라 개 · 증축 및 필요 시 신축, 폐 · 공가 및 폐교 등 리모델링 등 ▶ 복지 관련 지역정보 집약 및 공유의 거점, 마을미디어 활용 및 정보공유, 활동단체간 자원(기자재, 설비 등) 공유 등

○ 주민자치회 기본형으로서 지역복지형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복지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광역형 마을만들기 사례(예: 광주 북구 각화동 시화마을), ②임대아파트형 마을만들기 사례(예: 서울 강서구 방화11동 종합사회복지관), ③지자체 혁신형 마을 만들기 사례(예: 전북 진안군 마을), ④빈곤지역 자활공동체형 마을 만들기 사례(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희망세상),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지역특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이므로, 추진모델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역복지형의 추진모델을 시론적 차원에서 도출함에 있어서, 상기 안심마을형과 같은 6단계 표준 추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표 4 참조), 본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두 가지 기본형은 모두 주민주도적으로 형성한 주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복지 및 생활안전 등에서 주민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당 활동들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따라서 주민네트워크의 형성과 주민자치회 주도의 워크숍 및 마을지도의 작성(community mapping), 주민활동 및 마을단위 인프라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활동과 거점확보 등 기본적인 추진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표 5〉 주민자치회 지역복지형 국내 사례 : 경기 수원시 송죽동 사례

희망 송죽 네트워크	장안구 보건소,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이쿱 미래생활협동조합, 만사모, 수원의료원, 청솔노인복지관, 송죽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모임으로 2012년 마을 르네상스 공모에 선정된 '건강한 솔대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자전거 쉐어링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 공유제도 · 주민들로부터 자전거를 기부받아 운영
	▶ 건강한 솔대마을 축제	· 건강한 주민, 건강한 환경, 건강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건강한 솔대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을 알리는 자리 마련 · 심폐소생술 체험, 영양 · 혈당체크, 자전거 무상수리 등 다양한 체험부스 설치
	· 건강한 솔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 건강한 솔대마을 만들기 토론회 및 정자토론회 개최 · 건강한 솔대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교육	

○ 지역복지형 표준모델 추진방안은 기존의 안심마을 추진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진하면서 다양화를 꾀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내용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기존의 주민자치회 지역복지형 우수사례를 통해 보면 대부분이 관이 주도가 되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주민주도라고 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민참여의 조직화 등 체계적인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핵심은 주민주도적인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로 집약(표 5 및 6 참조)

○ 요컨대 주민자치회의 기본형으로서 복지마을의 추진모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민주도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민안전망을 기존의 관주도와 병행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안심마을형과 마찬가지로, 향후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의 결과와 피드백에 따라 상기의 제안된 추진모델은 실제적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표 6〉 주민자치회 지역복지형 국내 사례 : 서울 서대문구 사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사랑의 119 도우미'와 함께 홍제 3동 개미마을 외 3개동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실시	
	▶ 사업내용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출입문, 도배, 장판, 위생기구, 전기, 조명, 난방, 지붕, 기타 안전시설 등 교체 · 수리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출입문 교체(미닫이 등), 경사로 설치, 문턱 낮춤 등의 공사 시행
	▶ 지원대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 동 주민센터 및 서대문 새마을지회 선정 추천
	▶ 추진방법	사랑의 119 도우미(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위탁
행복 울타리 프로젝트	·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기 위해 동 기능을 전환하고 업무를 개편하여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복지 고용 보건 교육 등 8개 분야 복지를 통합 서비스하는 제도 · 동 주민센터를 각종 분야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100가정 보듬기 프로젝트	법적요건의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과 후원자가 1:1로 결연되어 지속적인 후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민간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진행
	▶ 누리보듬 사업단	100가정 보듬기 결연가정의 가구별, 사례별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단
	▶ 복지 동장제	기존 동장의 업무에 복지순찰 및 복지지원 발굴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업무를 부여
	▶ 통장 복지도우미제	지역 내 소외계층 발굴 및 주기적인 방문, 상담일지 기록 후 동장에게 제출하여 복지지원

Ⅵ. 결론: 개선점과 후속연구

○ 요컨대 주민자치회의 두 가지 기본형은, 모두 주민주도적으로 형성한 주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복지 및 생활안전 등에서 주민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당 활동들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주민자치회 주도의 주민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워크숍과 마을지도를 작성하고, 복지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민활동은 물론 마을과 근린생활권의 다양한 복지·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활동과 복지·안전거점의 확보 등으로 추진모델을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추진모델은 기존의 국내외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선험적인 것으로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및 1~2차에 걸친 세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근린자치의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향후 「(가칭)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심마을형과 지역복지형의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함,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에게로 권한이 부여되었고 이를 입증할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행정편의적인 제도개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며, 주민자치회로의 제도개선과 권한부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제도적 권한을 소화하고 수행해나갈 지역의 주민역량은 아직 취약함

○ 안심마을형이나 지역복지형과 같은 추진모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도적인 네트워킹과 활동,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참여라고 볼 수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 따라서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와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각종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읍 · 면 · 동 근린자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정책과 지역역량을 보완하며 신뢰의 회복,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등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 종합적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실제적인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야 함

○ 후속연구에서는 나머지 5개 유형에 대한 추진모델의 도출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2개 유형의 추진모델에 대한 고도화는 물론, 이와 같은 장기적이며 본원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 및 주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것임

참고문헌

고경훈, 김건위, 안영훈 (2012).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30~151

곽현근 (2004).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3(1): 29~57

곽현근 (2009). “지역발전의 보완적 패러다임으로서 동네거버넌스의 실험”,「한국지방정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3~93

곽현근 (2011), “근린자치와 공동거버넌스”, 「지방행정」, 60(696): 18~21

곽현근 (2011). “공적가치 관리의 맥락에서 바라본 시민관점의 공공서비스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201~228

곽현근 (2012). “읍 · 면 · 동 근린자치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2. pp93~130

곽현근 (2012).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근린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21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2013.1.9. 제정 · 시행,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김필두, 류영아 (2008). 「읍 · 면 · 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pp34~35

민현정 (2012). “근린자치와 주민자치”, 「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pp5~31

서울특별시 (2013).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청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청 도시안전과 2012.12.21. 보도자료,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우수사례 발표」 참조

심익섭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57~8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2013.6.5. 보도자료, 「마을안전 · 지역복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안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 선정」 참조

안전행정부 (2013).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워크숍 자료(2013.10.31)」 및 김필두 (2013), 「읍 · 면 · 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이길영 (2013), "알기 쉬운 지역발전 정책: 주민에게 다가가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과 발전」, 12(2013년 여름호): 45~47

이재열 (2009). "사회발전과 측정", 「OECD 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pp11~36

전대욱, 최인수 (2013). 「생활안전문화 표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안심마을 시범사업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최인수, 박승규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9~25

정동근 (2000).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9, pp97~112

최인수, 전대욱, 양은경 (2013).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97~132

홍현미라, 이현주, 유동철, 민소영, 김형용, 강병덕, 최성미 (2012).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Cars, G., Allen, J., van Kempen, E., and Madanipour, A. (2004). Neighbourhood Governance: Capacity for Social Integration.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

최근 간행물

2013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통권 491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2012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통권 465 고령화 · 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2011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2010

통권 444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통권 44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통권 446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통권 447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통권 448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통권 449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50)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